

제 호				
긴급차단 해제 통지서				
이의신청자	성명(법인명)		대표자명	
	주소 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		연락처	
	전자우편주소			
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(URL)	※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.			
적발일시	※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.			
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제4항에 따라 긴급차단 해제를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				
비고 해당 긴급차단 해제는 임시적인 조치로,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6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 해제로 확정됩니다.				

(뒤쪽)

연번	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(URL)	적발일시
1		
2		
3		
4		
5		
6		
7		
8		
9		
10		
11		
12		
13		
14		
15		